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급수 445- <u>B21</u>	(전화번호 323)	전 결 규 정 조 항 전 결 사 항
처리기관	시 장		
시행일자	1981. 8. 4		
보존년한	1981. 8. 04		
보조기관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제3부시장
	수도국장	배수국장	합계국장
	급수국장		합계국장
기안책임자	급수장회국장 81. 8.		합계국장
경유 수신 장소	국안참조		
제 목	급수공사 정역적 실시에 따른 고시		
"제 1안"	"제 1안"		
수신 적목 동건	내부결재		
	1. 1981. 8. 10. 공포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 제 8조 - 제 10조에 의거 신규 급수공사 정역적 실시를 위하여 법령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적목	첨부 고시(안) 1부. 끝.		
"제 2안"	"제 2안"		
수신 적목 동건	본확공보관		
	1. 1981. 8. 10. 공포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 제 8조 - 제 10조에 의거 신규 급수공사 정역적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공고 및 시보에 게재코자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문공고규격 : 3단x37행x3,355원 = 372,405원		

나. 신문공고사 : 6개 일간지

다. 광고일차 : 21. 8. 10

라. 소요 예산 : 372,405원 × 6 = 2,234,430원

마. 공고료 지불방법 : 청구액의 카 지불

첨부 고시(안) 1부. 끝.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신규 급수공사 경쟁제 실시 고시

서울특별시 급수준칙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신규 급수공사 경쟁제 실시지역 및 경쟁제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1. 8. 10.

서울특별시청 박 영 수

- 1. 실시일 : 1981년 8월 10일 접수일 부터 시행
- 2. 실시지역 : 서울시 급수 가능 지역 전역 (특정지역 제외)
 다만, 미급수지역 및 급수제한 지역은 급수가능시 실시
 미급수지역과 급수제한지역 상세지번 및 도면은 해당구청 수도2과에 비치
- 3. 대 상 :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건축물
 - 0. 주거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단, 연건축면적 165㎡ 이상은 일반건축물 적용
 - 0. 일반건축물
- 4. 경쟁제 공사비 내용
 - 0. 주거용 건축물 세대당 : 290,000원
 일반건축물 연건축면적 165㎡ 미만 : 290,000원
 - 0. 연건축면적 165㎡ 이상 : ㎡당 1,800원
 다만, 공과금은 별도 납부하여야함.
- 5. 경쟁제 공사비 적용방법

실공사비 소요액		비 고
경쟁제공사비의 150% 미만	경쟁제공사비의 150% 이상	
290,000원 165㎡ 이상 ㎡당 1,800원	경쟁제공사비의 150% 이상 후자분을 가산하여 징수	

6. 농경지

0. 급수공사를 위하여 특별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야 함 기준

- 농장단지 및 주변 125 H 이상
- 대교단지 및 주변 110 H 이상
- 도면은 수표국 급수 되어 비치

0. 이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그 비용 부담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상하수도 법도 협의 하여야 한다.

7. 경역제 공사비 납부방법

0. 공사비는 신청후 입찰금 차수에 의거 공사비의 납부 하여야 함

8. 결과규정

0. 회시일 이전 급수본국 이미 승인된 신규급수 공사는 중전 설비 증산제에 의한다.